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7노4809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7노48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 예훼손),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오세영(기소), 이희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6고단5136 판결

판결선고 2018. 7. 2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 1. 항소이유 요지
-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1) 피고인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고 공익을 위해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거나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
- 2) 2014. 3. 16.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병역 기피 관련 트위터 글)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후에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으므로 위 게시 행위는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 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3) 2015. 2. 28.자 피고인의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북한 사이버 댓글팀 관련 트위터 글)의 내용은 피고인의 추측성 의견표명에 불과할 뿐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5. 3. 25.자, 2015. 4. 5.자, 2015. 4. 7.자 및 2015. 2. 4.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가 모두 성립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 2.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에 관한 판단
- 가. 명예훼손의 고의, 비방의 목적 부존재 및 위법성조각 주장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공인임을 감안하더라도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병역기피 관련 트위터 게시 글 관련 부분) 병역기피는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는 중대한 범행이고,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사실 자체로 개인적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글 게시 이전에 피해자가 병역을 기피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었고, 오히려 실제 사실 즉, 피해자가 산업재해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것은 쉽게 확인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실제 병역 면제 이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병역기피자로 단정하고 이를 전제로 자신의 트위터에 피해자에 대한 병역 기피 관련 글을 게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 같은 놈' 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피해자를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였다.

2 (북한 사이버 댓글팀 글 관련 부분) 북한이 피해자의 Q 선거 및 당선을 도와주었다는 내용은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하면 정치인이자 Q인 피해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제시한 T'이라는 기사들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직접적이고 확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면서 피해자가 북한 사이버 댓글팀의 도움을 받아 Q에 당선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트위터에 반복하여 게시하였다.

3 피고인이 그 진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트위터를 통하여 피해자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과 함께 부정적인 표현을 수반하여 악의적으로 비난하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이상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병역기피 관련 트위터 글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4. 3. 16. 피해자가 병역을 기피하였다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 행위가 완료된 이상 피고인이 이후 위 트위터 글을 정정하는 추가로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 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피고인은 2014. 3. 16. 트위터 글을 삭제하지도 아니하였다).

다. 2015. 2. 28.자 북한 사이버 댓글팀 관련 트위터 글 부분에 관한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741 판결,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게시한 2015. 2. 28.자 트위터 글은 피해자가 북한 사이버 댓글팀을 도움을 받아 선거를 치렀다는 내용이다. 이는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로서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트위터 글을 게시할 무렵 피해자가 북한 사이버댓글팀의 도움을 받아 Q에 당선되었다는 취지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반복하여 게시한 사정까지 더하여보면, 피고인의 위 트위터 글 게시행위는 '사실의 적시'라고 판단된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2015. 3. 25.자, 2015. 4. 5.자, 2015. 4. 7.자 및 2015. 2. 4.자 각 정보통 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인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 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며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 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정훈(재판장) 이상엽 김영욱